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 청년청장 김영경입니다.

- 의안번호 제1739호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편, 서울특별시 청년청에서는 서울혁신파크 내 청년활동공간 청년청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청년활동공간 청년청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향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의 위탁사무에 포함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예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신규위탁을 위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위탁사무는 청년정책의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청년활동 및 청년공간의 지원,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청년활동공간 청년청의 관리·운영 등입니다.

-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3.

청년청장 김 영 경